◉ 상주시공고 제2018-1232호

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27일

상주시장 상주시장의인

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·공헌한 국가보훈대장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당을 확대(1~5호 ⇒ 1~18호) 지원하여 지급시기도 매분기로 통일하여 인근 시·군과의 형평성을 기하며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변경하는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(안 제7조의2)

- 보훈명예수당 (·지급 범위 확대: 1~5호 ⇒ 1~18호

나.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(안 제7조의5)

- 지급시기 변경: 매월 ⇒ 분기

3. 의견 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 : 사회복지과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·시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기간: 2018. 12. 28. ~ 2019. 1. 18.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주소 : (우37211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(사회복지과)

2) 전화 : 054-537-6727

3) 팩스 : 054-537-65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사회복지과(전화 : 054-537-6727, 오은숙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조례 개정안은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 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붙임)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